

문서번호	TYM-ESG-002	윤리강령 실천지침	개정일자	2022.09.01
페이지	1 / 10		개정번호	1

윤 리 강 령 실 천 지 침

(구성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하지 말아야 할 주요 비윤리 행위)



주식회사 티와이엠

문서번호	TYM-ESG-002	윤리강령 실천지침	개정일자	2022.09.01
페이지	3 / 10		개정번호	1

목차

제1장 총칙

- 제 1 조 (적용범위)
- 제 2 조 (방침)
- 제 3 조 (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)
- 제 4 조 (용어의 정의)

제2장 이해관계자에게 사례를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

- 제 5 조 (부정청탁)
- 제 6 조 (금품 수수)
- 제 7 조 (향응 · 접대)
- 제 8 조 (편의 제공)
- 제 9 조 (채무의 면제, 상환, 보증 및 금전 등의 자산 대차)
- 제 10 조 (배우자, 친인척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제한)

제3장 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행위

- 제 11 조 (본인 및 배우자, 친인척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)
- 제 12 조 (이해관계자와의 공동투자, 공동재산 취득)
- 제 13 조 (BP 에 대한 투자)
- 제 14 조 (타회사 임직원 겸임 · 겸직)

제4장 회사자산을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

- 제 15 조 (회사자산 및 정보의 유출)
- 제 16 조 (예산 낭비 및 사적사용)

제5장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해치는 행위

- 제 17 조 (업무태만 및 근태불량)
- 제 18 조 (허위보고)
- 제 19 조 (직장 내 괴롭힘 등의 구성원 간 부당행위)
- 제 20 조 (성희롱)

제6장 기타 개인의 품위 훼손과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제반 행위

- 제 21 조 (개인의 품위 훼손과 회사의 명예 실추)

제7장 윤리강령 실천지침의 준수

- 제 22 조 (윤리강령 실천지침의 준수 책임)

부칙

문서번호	TYM-ESG-002	윤리강령 실천지침	개정일자	2022.09.01
페이지	4 / 10		개정번호	1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적용범위)

본 규정은 주식회사 티와이엠(이하 “TYM”라 한다)의 구성원(해외 현지법인, 사무소 포함)에게 적용한다.

제 2 조 (방침)

본 지침은 구성원이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 등을 정한다.

제 3 조 (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)

구성원은 다음의 의사결정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.

가. 합법성 : 자신의 행동이 법규 또는 사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가?

나. 투명성 :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가?

다. 합리성 : 다른 구성원들도 동일한 상황에서 같은 결정을 할 것인가?

제 4 조 (용어의 정의)

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금품 : 금전, 유가증권, 부동산, 기타 물품, 숙박권, 회원권, 입장권, 할인권, 초대권, 관람권, 기타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향응·접대 또는 편의 제공 및 채무 변제·취업제공·이권 부여 등 그 밖의 모든 유·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
2. 향응·접대 : 식사, 골프, 공연, 국내·외 관광, 사행성 오락 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
3. 편의 : 금품 수수, 향응·접대 이외의 교통, 숙박, 관광 안내 및 행사지원 등의 수혜
4. 친인척 : 본인과 배우자의 4촌 이내
5. 공금횡령 : 공금을 가로채어 자신의 자산으로 삼는 행위
6. 공금유용 : 공금을 사사로이 다른 곳에 돌려쓰는 행위
7. 기물 유출 : 회사의 기물을 개인 사용하거나 매각 등의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는 행위
8. 타용도 사용 : 사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회사의 시설, 기계, 자재, 기타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

문서번호	TYM-ESG-002	윤리강령 실천지침	개정일자	2022.09.01
페이지	5 / 10		개정번호	1

9. 이해관계자 : 본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·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

또는 그룹(고객, 구성원, 주주, Business Partner, 지역사회, 국가, 공직자 등)

내부 이해관계자	종업원, 노조, 이사회
사업파트너(Business Partner)	협력업체, 지역 딜러점, 판매점, 서비스 제공자
소비자 그룹	소비자 그룹(고객), 소비자연맹 등
유관기관	정부, 규제당국, 유관기관
외부 영향자	주주, 전문가집단, 언론, 지역사회 구성원, 특정 이해관계단체

10. 업무태만 : 직위, 직책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

11. 근태불량 : 고의적, 상습적으로 지각, 무단결근을 하거나 비정상적으로 근태를 처리하는 행위

12. 불합리한 업무처리 :

가.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행위

나.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업무를 지연하거나 방해, 방조 또는 사주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행위

13. 월권행위 : 직위, 직책상 하지 말아야 할 일이나 자기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하여 타인의 직권을 침범하는 행위

14. 직장 내 괴롭힘 :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

15. 성희롱 : 상대방에게 성(性)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

16. 통상적 수준 : 장소, 목적, 참석자의 범위 및 지위, 주최자의 내부기준과 비용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유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으로 관계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수준

제 2 장 이해관계자에게 사례를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

제 5 조 (부정청탁)

문서번호	TYM-ESG-002	윤리강령 실천지침	개정일자	2022.09.01
페이지	6 / 10		개정번호	1

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이해관계자에게 사규 또는 법령에 위반하거나 정당한 거래 관행에 반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부정청탁에 따라 업무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.

- 채용, 평가 등의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는 행위
- 장래의 고용 또는 취업 등의 제공이나 알선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이는 행위
- 거래 계약 체결과 그에 준하는 혜택을 보장하는 행위
- 기타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부당한 청탁 및 알선을 하거나 지시하는 행위

제 6 조 (금품 수수)

1. 이해관계자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, 후원,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을 개인적으로 수수(授受)하거나 제공 의사 표시,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. 단,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.

-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통상적 수준의 홍보·행사용 기념품이나 물품
- 상사(직책자)가 위로·격려·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위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
- 퇴직·이동 등에 따른 통상적 수준의 구성원 간의 전별 선물
- 상부상조의 취지에 따른 통상적 수준(10 만원 이하)의 경조금, 선물 등

2. 본인 또는 동료의 경조사를 Business Partner(이하 “BP”라 한다)에 알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경조사를 알리지 않았음에도 BP 가 화환이나 경조사비를 제공한 경우 윤리경영전담부서(ESG 전략팀) or TYM 사이버감사실(www.audit-tym.world)에 신고한다. (참고기준: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)

3. 이해관계자가 선물 등 금품을 줄 경우에는 정중히 거절하거나 되돌려주어야 한다. 불가피하게 수령하더라도 개인이 소유해서는 안 되며, 윤리경영부서(ESG 전략팀)에 신고하여 회사의 사회공헌 등에 활용한다.

1) 반송 가능 상품 : 시간 경과에 따라 부패의 우려가 없는 선물(선물세트, 양주 등)

- 행동요령 : BP 대표 앞으로 선물을 반송하고, 반송사유 및 성의에 대한 감사의 뜻과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 서신을 BP 대표에게 송부한다.

문서번호	TYM-ESG-002	윤리강령 실천지침	개정일자	2022.09.01
페이지	7 / 10		개정번호	1

2) 반송 불가능 상품 :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선물(농축산물 등)

- 행동요령 : 윤리경영담당(ESG 전략팀)에 신고하여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하여 사회공헌 등에 활용하고,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 서신을 BP 대표에게 송부한다.

제 7 조 (향응·접대)

- BP와의 식사 비용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이해관계자에게 향응·접대를 수수(授受)하거나 요구·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. 단,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.
 -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BP와의 통상적 수준의 식사(3만원이내)
 -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모든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나 음주 등 음식물
 -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·의례·부조의 목적으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제공하는 식사 등 음식물
 - 기타사항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.
- BP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고가의 식사, 술자리, 유흥·퇴폐업소 출입, 골프 등은 금지한다.

제 8 조 (편의 제공)

이해관계자에게 편의를 수수(授受)하거나 요구·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. 단,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모든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·숙박·음식물 등의 편의는 예외로 한다.

제 9 조 (채무의 면제, 상환, 보증 및 금전 등의 자산 대차)

- 이해관계자에게 채무(카드대금, 외상값, 대출금, 이자 등)에 대한 면제, 상환, 보증(대출기관의 형태에 관계없이)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.
- 이해관계자와 금전 등의 자산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, 계약 체결, 이자나 임차료 또는 임대료의 지급·수취 여부를 불문하고 위반행위로 간주한다.

제 10 조 (배우자, 친인척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제한)

문서번호	TYM-ESG-002	윤리강령 실천지침	개정일자	2022.09.01
페이지	8 / 10		개정번호	1

구성원은 배우자, 친인척의 경우에도 구성원의 경우에 준하여 제 2 장 이해관계자에게 사례를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제한되므로 평소 주의·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.

제 3 장 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행위

제 11 조 (본인 및 배우자, 친인척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)

1. 본인 및 배우자, 친인척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 행위를 할 수 없다. 단, 다음 상황에 대해 윤리경영 담당조직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- 회사 소유 자산을 본인 및 배우자, 친인척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
- 본인 및 배우자, 친인척의 자산을 회사에 매각하는 경우

2. 구성원은 본인 및 배우자, 친인척이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BP(협력사, 딜러점, 판매점 등)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대표이사·감사·임원 등 경영진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래 행위 발생 여부와 상관 없이 특수관계가 있음을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(이해관계자와의 공동투자, 공동재산 취득)

본인 및 배우자, 친인척은 목적에 관계없이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동산, 부동산 등의 자산(콘도 미니엄, 골프·헬스클럽 회원권, 합작 투자사업 등 포함)을 취득할 수 없다. 비록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분 소유 관계에 있는 자산은 전부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투자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 13 조 (BP 에 대한 투자)

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주거나 성실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BP 의 주식, 채권 등의 개인적인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.

제 14 조 (타회사 임직원 겸임·겸직)

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성실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겸업 또는 부업 등은 할 수 없다. 단, 회사의 필요에 의해 승인된 투자회사, 관계사 등의 겸임은 가능하며, 겸직으로 추가 보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HR 담당조직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. 회사의 승인 없이 겸임·겸직

문서번호	TYM-ESG-002	윤리강령 실천지침	개정일자	2022.09.01
페이지	9 / 10		개정번호	1

을 하게 되는 경우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신고하여 검토·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4 장 회사자산을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

제 15 조 (회사자산 및 정보의 유출)

1. 회사자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공금횡령, 공금유용, 기물유출, 타용도 사용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2. 회사의 정보와 영업비밀을 사전 승인 없이 내·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.
3. 모든 이해관계자의 입찰, 기술, 영업비밀, 개인정보 등을 외부 유출 및 제 3 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.

제 16 조 (예산 낭비 및 사적사용)

1. 투자예산, 경비예산 집행 등 회사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.
2. 회사비용을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,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허위증빙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.
3. 비용은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, 법인카드 관리규정 및 사용지침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한다. 특히 업무와 관련이 없는 시간·장소·상황 등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제 5 장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해치는 행위

제 17 조 (업무태만 및 근태불량)

업무태만, 근태불량, 관리감독 소홀, 불합리한 업무 처리, 월권행위 등 개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권한을 오·남용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제 18 조 (허위보고)

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문서, 계수 등을 은폐·축소·과장·누락·지연하여 내·외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판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제 19 조 (직장 내 괴롭힘 등의 구성원 간 부당 행위)

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(직장 내 괴롭힘)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문서번호	TYM-ESG-002	윤리강령 실천지침	개정일자	2022.09.01
페이지	10 / 10		개정번호	1

다.

제 20 조 (성희롱)

상대방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(직장 내/외부를 모두 포함한다)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6 장 기타 개인의 품위 훼손과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제반 행위

제 21 조 (개인의 품위 훼손과 회사의 명예 실추)

1. 구성원은 각자의 언행이 회사를 대표함을 명심하고, 회사의 신뢰와 명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.
2. 법률, 회사의 규정 및 자기의 양심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, 개인의 품위 훼손과 회사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(도박, 성범죄, 폭력, 사기 등)를 하거나 교사해서는 안 된다.

제 7 장 윤리강령 실천지침의 준수

제 22 조 (윤리강령 실천지침의 준수 책임)

1. 구성원은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.
2. 조직의 리더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, 솔선수범하여야 한다.
3. 본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징계 처분 및 조치를 받게 된다.

부칙

1. 본 윤리강령 실천지침은 2022 년 9 월 1 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